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2019년 4월 30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.방송.통신29일(월)15시엠바고 심의위 종료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
(심의 결과에 따라 자료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.)

배포일시	2019. 4. 29.(월)	담당부서	산업기술정책과
담당과장	김대자 과장(044-203-4510)	담 당 자	최수연 서기관(044-203-4511) 김철영 사무관(044-203-4514)

'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',

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

① 휴게소 식당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등 5건 → 실증 특례
②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등 2건 → 임시 허가
③ 태양광 연계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 ESS 등 2건 → 정책 권고
④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 등 2건 → 규제 없음 확인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4.29(화) **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**를 개최하고, DTC 유전자검사 기반 비만·영양관리 서비스 등 **11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**하였다.

○ 산업부는 금번 심의위에 앞서 **6차례의 전문위원회**를 개최하여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들의 신청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

○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등 **5건에 대해 실증특례**,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등 **2건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**하였다.

* 보고안건은 정책권고 2건, 규제없음 확인 2건 등

< **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** >

○ **일시 및 장소** : '19.4.29(월) 13:30, 산업부 대회의실(506호)
○ **참석자** : 산업부 장관(위원장), 규제특례 심의위원, 관계부처 등
○ **안건(11)** :
- (실증특례) ①~③ DTC 유전자검사 기반 서비스, ④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, ⑤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
- (임시허가) ⑥ 의료기기(스마트AED) 판매 ⑦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
- (정책권고) ⑧ 태양광 연계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 ESS, ⑨ 개인맞춤 화장품원료·화장품
- (규제없음) ⑩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, ⑪ 전자저울 활용 스마트 이력 서비스

【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】

□ 금일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는 **총 11건의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안건에 대해 논의**했으며, 안건별 주요 내용과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.

[안건1,2,3]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허용항목 확대 : 실증특례

□ **(신청 내용)** ㈜**테라젠이텍스, ㈜메디젠휴먼케어, DNA링크** 3개社는 **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허용항목 확대** 관련 **실증특례**를 신청하였다.

□ **(현행 규제)** 「**생명윤리법**」은 **의료기관이 의뢰한**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 항목은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,

○ **비의료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**할 수 있는 DTC(Direct to Consumer) **유전자 검사 항목은 12가지*로 제한**하고 있어, 유전자 검사기관은 소비자에게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.

* (현행 허용 검사항목) 체질량지수, 중성지방농도, 콜레스테롤, 혈당, 혈압, 색소 침착, 탈모, 모발굵기, 노화, 피부탄력, 비타민C농도, 카페인대사 등

□ **(심의 결과)** 심의위는 기존 12가지 항목 외에 ㈜테라젠이텍스, 메디젠 휴먼케어, DNA링크의 **추가적인 검사 항목에 대해 실증특례를 허용하였다.**

유전자 검사기관	추가 허용항목	지역/기간/ 규모
㈜테라젠 이텍스 (24)	▸(비만관리 ; 6) 식욕조절, 지방대사, 염증, 당대사, 에너지소모, 스트레스 ▸(영양관리 ; 18) 코엔자임Q10, 마그네슘, 아연, 칼슘, 철분, 셀레늄, 비타민 A·B·D·E·K, 루테인, L-카르니틴, 타이로신, 베타인, 오메가3·6, 파이토에스트로겐	서울/ 18개월/ 약1,200명
㈜메디젠 휴먼케어 (13)	▸(운동능력 ; 13) 근육발달, 악력, 지구력, 심박수회복력, 골절가능성, 부상가능성, 체중조절(비만), 스트레스민감도, 순발력, 운동적극성, 생체리듬, 다기능수행능력, 운동감각능력	수도권/ 2년/ 약3,000명
DNA링크 (32)	▸(암 ; 6) 대장암, 폐암, 위암, 간암, 갑상선암, 전립선암 ▸(질환 ; 14) 관상동맥질환, 심방세동, 뇌졸중, 두개강내 동맥류, 제2형당뇨병, 파킨슨병, 황반변성, 만성신장질환, 비알콜성지방간, 고혈암, 역류성식도염, 만성폐쇄성폐질환, 골관절염, 고지혈증 ▸(웰니스 ; 12) 항산화능력, 염증체계, 비타민 A·B·D·E, 지방산, 마그네슘, 운동효과, 체중조절, 니코틴의존도, 알코올의존도	광주/ 2년/ 약2,000명

○ (테라젠이텍스) **소비자들의 비만관리·영양관리**에 영향을 미치는 **26개 유전자 항목에 대한 실증을 신청**하였으며, 심의위는 실증 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**개인의 성격**(콜린), **우울증**(트립토판) **항목을 제외한 총 24개 항목에 대해 실증을 허용**하였다.

○ (메디젠휴먼케어) **한국인에 맞는 운동능력** 유전자 발굴을 위해 **15개 항목의 실증을 신청**하였으며, 심의위는 실증연구의 대상이 성인인 점과 DTC 항목 확대시에도 영·유아·청소년에게 신체의 외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**신장과 체형을 제외한 총 13개 항목에 대해 실증을 허용**하였다.

○ (DNA링크) 유전자 검사를 통한 **건강관리 개선효과**를 전반적으로 확인코자 **총 59개 항목에 대한 실증을 신청**하였으며, 심의위는 유병률*, 국민건강부담률** 등을 고려하여 암 6개, 질환 14개, 웰니스 12개 **총 32개 항목에 대해 실증을 허용**하였다.

* 인구 수 대비 환자 비율, ** (예시)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손실된 수명(DALY)

○ 이번 실증특례는 보건복지부와 심도깊은 논의 끝에 **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**하여 질병예방 및 의료기술 수준 향상 등을 위해 부여된 것으로, 약 **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연구목적으로 진행**된다.

* (테라젠) 서울/18개월/1,200명, (메디젠) 경희대·건국대·한체대를 통해 모집된 엘리트 체육인 및 고대 안암병원 내 비만환자/2년/약3,000명, (DNA링크) 광주/2년/2,000명

○ 또한,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에서 **실증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*한 후 실증을 추진****한다.

* 연구방법에 대한 검토이며, 실증특례 승인을 철회·유보하지는 않음
** 복지부 시범사업에 포함되는 항목은 시범사업과 연계

□ **(기대효과)** 이번 실증으로 **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의 문턱을 낮추어, 바이오 신시장 확대**뿐만 아니라 **국민건강 증진**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[안건4]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: 실증특례

□ **(신청 내용) 한국도로공사**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매장을 활용(공유)하여 **청년·취약계층 창업자들의 야간매장 운영**을 지원하기 위한 **실증특례**를 신청하였다.

○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영업 종료(20시) 이후 커피·간식류 등의 서비스가 제한되는 점을 활용한 아이디어로, **동일한 공간을** 일반사업자(8시~20시)와 별개 사업자(20시~24시)가 **시간을 나눠 공유**하는 형태이다.



[휴게소식당 주방 공유 체계도]

○ 특히, 이 안건은 규제 소관부처인 식약처가 주도적으로 신청기업인 도로공사 및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.

□ **(현행 규제)「식품위생법」**및 하위 법령에 따르면 **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** 신고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, 구분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, **기존 사업자가 운영 중인 영업장에 다른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.**

□ **(심의 결과) 심의위**는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에 대해 **2개 고속도로 휴게소*에서 2년간의 실증특례를 부여**하였다.

*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, 안성(부산방향) 휴게소

○ 실증기간 동안 한 개의 식품접객 영업장에서 여러 사업자가 사업을 할 경우, 위생사고·관리책임 등 다양한 이슈 발생 여지에 대해 **도로공사와 휴게소 사업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**하도록 당부하였고,

○ **식약처의 규제정비 방향성을 검토**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였다.

□ **(기대효과)** 공유주방(Shared Kitchen) 개념은 미국, 일본 등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**관련 제도의 선제적 정비**를 통한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,

○ **상생 기반의 공유경제 활성화, 청년·취약계층의 창업 일자리 창출** 등 **사회적 가치 실현**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[안건5]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 : 실증특례

□ **(신청 내용) 빅픽처스**는 실제 **건설기계 운용 환경을 재현**하여 조종 교육훈련에 적용하는 **"VR HMD 시뮬레이터"**의 **실증특례**를 신청하였다.

○ 본 실증은 대형 굴삭기 자격증 **필기 합격자를 대상**으로, 굴삭기 운전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에서 규정하는 있는 12개 과정중 **시뮬레이터에서 구현 가능한 과정**에 대하여 실습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.



[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굴삭기 실습 모습]

□ **(현행 규제)**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에 따라 직업전문학교, 실용전문학교 등 '지정직업훈련시설'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「직업능력개발훈련의 **직종별 훈련기준」에 따라 훈련을 실시**하여야 한다.

○ 그러나 **현행 「건설기계 운전 훈련기준」**은 **굴삭기 등 실장비만** 실습 훈련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, **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교육은 훈련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.**

□ **(심의 결과)** 심의위는 **VR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굴삭기 훈련에 실증특례를 허용**하여, 실습 교육시 이를 **실장비와 병행하여 활용**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○ **특례기간**동안 **교육기관 2곳***에서 **총 40명의 교육생**에게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육이 이루어진다.

* (교육기관) 대한중장비운전학원(대전 소재), 청주직업전문학교(충북 청주시 소재)

** (훈련과정 및 시간) 12개 훈련과정 중 주행, 시험터파기, 터파기, 쌓기, 메우기 등 5개 과정에 한하여 총 훈련시간의 50%(75시간)을 시뮬레이터로 교육

○ 또한 고용노동부는 **굴삭기 실습 훈련장비**에 **VR 시뮬레이터를 선택장비로 추가**하는 방향으로 현행 「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」을 개정하기로 하였다.

□ **(기대효과 및 유사사례)** VR 시뮬레이터를 건설기계 운전 교육에 적용함으로써, 실습장비 구축·유지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현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, 아울러 교육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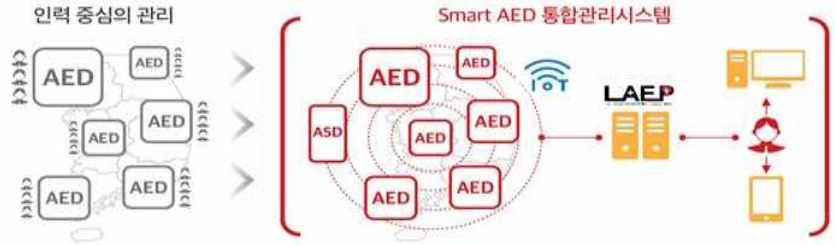
○ 또한 VR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중장비 교육의 효과성이 입증되면, 향후 VR 시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○ 이미 캐터필라, 볼보, 코마츠 등 글로벌 건설기계 제조사는 자사 제품에 최적화된 VR 시스템을 교육 및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.

[안건6] 의료기기(스마트 AED) 판매 : 임시허가

□ **(신청 내용) 루씨엠㈜**은 자사가 입주해 있는 **지식산업센터 공장구역**에서도 **의료기기 판매업 신고**가 가능하도록 하여, **스마트 AED**(자동심장충격기)**를 판매**할 수 있도록 **임시허가**를 요청하였다.

* 스마트 AED : IoT 기술을 접목하여 AED의 상태(작동여부, 배터리·보관함 상태 등)를 통합 모니터링하고, 응급상황 발생 시 정상작동 및 생명구조 성공률을 제고



[스마트 AED 통합관리시스템]

□ **(현행 규제)** 「**건축법**」상 의료기기 판매점은 **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주**해야 하며, 「**산업집적법**」상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은 센터 내에 제조시설과 부대시설(판매장)을 설치할 수 있으나 **자사 생산제품에 한해서만 판매**할 수 있다.

○ 신청기업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상태이나, 신청기업이 판매하고자 하는 스마트 AED는 자사 제품(IoT단말기)·서비스와 타사 제품(AED)이 융합된 형태로, 현행 규정상으로는 **부대시설에서의 판매가 불가능**하다.

* 복합제품의 경우 주된 생산단위(부가가치액이 가장 큰 제품)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동 제품은 타사 제품으로 구분됨

□ **(심의 결과) 심의위**는 산업간, 기술간 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최근 시장 동향과 많은 IT융합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중임을 감안, 루씨엠㈜이 **지식산업센터 공장구역 내에서 융합 신제품 판매**를 할 수 있도록 **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**하기로 결정하였다.

○ 다만, 「산업집적법」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조성 취지를 고려하여 ❶**센터 내 생산시설을 갖춘 입주기업**일 것, ❷**타사 제품이 아닌 자사+타사 융합 신제품·서비스**를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허용하였다.

* 산업집적법상 '공장의 부대시설(부속용도)'로서 센터 내 판매장 설치 허용 시, 건축법상 제한은 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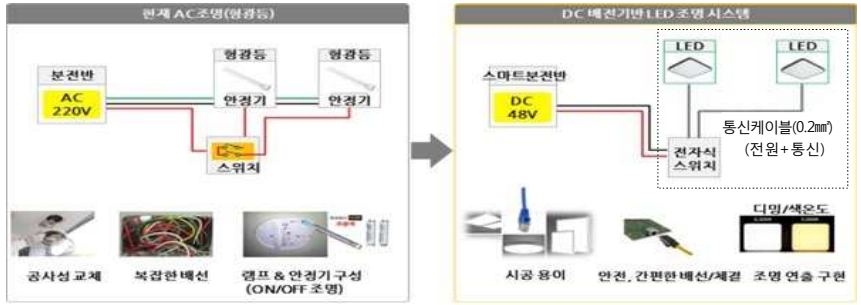
○ 또한, 심의위는 산업부로 하여금 **산업융합 신제품·서비스에 대해 지식산업센터 공장구역에서도 판매가 가능**하도록 임시허가 기간 동안 **산업집적법령의 개정을 추진**할 것을 주문하였다.

□ **(기대 효과)**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IT 기반의 융합제품을 생산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**별도 사업장 운영비용을 절감**할 수 있게 되어, **혁신제품의 확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**

○ 또한 IoT기술을 융합한 **실시간 AED 통합관리 체계**를 통해 사람이 일일이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**심정지 응급상황의 생존율 제고**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[안건7]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: 임시허가

□ **(신청 내용)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㈜**는 공동주택 세대 내 조명용 전원을 기존 교류방식에서 직류방식으로 변환하고, **통신케이블로 LED 조명에 전원과 통신을 동시에 전송**하는 **스마트 LED조명 시스템**에 대해 **임시허가를 요청**하였다.



[DC 배전 기반 LED 조명 시스템]

□ **(현행 규제)** 「전기사업법」 하위 규정인 「**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**」에 따르면 주택의 옥내전로는 LED 조명시스템에 사용되는 **직류(DC) 48V 방식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나,**

○ **옥내배선용 전선에 대해 단면적 2.5㎟ 이상**의 연동선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, **얇은 통신케이블(0.2㎟)을 옥내배선용 전선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**이다.

□ **(심의 결과) 심의위**는 '직류기반 LED 조명시스템'이 기존 방식보다 **에너지효율·편의성에서 우수**하고, **KC 안전기준 제정절차가 진행중**인 점, **안전 문제라기보다는 기존 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문제**라는 점을 인정하여 **임시허가를 허용**하기로 결정하였다.

○ 신청기업은 국가기술표준원이 행정예고한 KC 안전기준(안)을 충족하는 한편, 향후 KC 안전기준이 확정된 이후에는 정식인증을 획득하기로 약속하였다.

□ **(기대 효과)** 스마트 LED 조명은 각종 센서 연결, 디밍(dimming)*, 색온도 제어 등이 가능하여 **IoT 서비스와 사용자 중심의 맞춤 환경 구현**에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소비자 요구에 따라 조명 밝기를 다양하게 조절 및 분위기 연출 가능

○ 또한 저전압 특성 상 시공 과정의 사고위험 감소, 관련 LED 조명산업 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.



· 배선 복잡
· 절연작업 필요
· 작업시간 김



· 잭을 이용 연결
· 확실한 절연
· 작업시간 짧음

[기존 연동선과 통신케이블 사용 시 비교]

[안건8] 태양광 연계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 ESS : 정책권고

□ **(신청 내용) ㈜에이치투**는 기존 리튬이온배터리보다 안전성이 뛰어난 **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**를 태양광 ESS에 활용하여,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(REC) 판매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**임시허가**를 신청하였다.



□ **(현행 규제)** 「공급인증서 발급 규칙(에너지공단)」에 따르면 ESS설비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산업부에서 고시한 **「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규정」**에 따른 **시험성적서가 필요**하다.

○ 그러나 현행 **산업부 고시**에는 고효율기자재 대상 **ESS 설비**가 **리튬이온배터리를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**되어, **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를 이용할 경우** 대상에서 제외된다.

□ **(심의 결과) 심의위**는 소관부처인 **산업부로 하여금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 ESS가 고효율기자재 대상에 포함**되도록, **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**하였다.

○ 다만, 고효율기자재 규정은 대상 기자재의 **안전성·성능 시험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***하도록 하고 있으나,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는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**적정한 시험방법과 시험기관이 없는 상태**이므로

* (예) 전지협회 표준 'SPS-KBIA-10104-01,-02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 안전성 및 성능시험방법'에 따른 시험을 완료한 리튬이차전지

○ 심의위는 산업부가 조속히 전지협회와 협의하여 **올해 상반기 내에 시험기준을 마련**하고,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인하도록 하였다.

□ **(기대 효과)**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는 리튬이온배터리에 비해 부피가 크고 에너지밀도가 낮지만 상대적으로 **낮은 가격, 장수명, 화재 안전성 등의 장점**이 많아 향후 대용량 ESS에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

[안건9] 개인 맞춤 화장품 원료·화장품 : 정책권고

□ **(신청 내용) 아람휴비스(주)**는 원료부터 고객의 피부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·피부관리실 등에서 조제·판매하는 **1:1맞춤 화장품에 대한 실증특례**를 신청하였다.

○ 본 실증은 **개인 맞춤 화장품 원료가 배송되고 다양하게 조합**되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**배합 비율, 제품 형태, 조제 과정** 등에 따른 **안전성을 정밀 검증**하기 위한 것이다.



[맞춤 화장품 조제 과정]

□ **(현행 규제)** '19년 1월 개정된 「**화장품법**」('20.3월 시행 예정)에 **맞춤형 화장품***의 **정의가 신설**되었으나, **원료와 원료를 배합하는 행위는 제조업으로서**, 향후에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등록 및 영업이 불가하고 신청기업에 적합한 **안전관리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**이다.

* 맞춤형 화장품 범위 : ❶내용물과 내용물의 혼합, ❷내용물과 원료의 혼합, ❸소분

□ **(심의 결과) 심의위**는 **신청기업이 제안한 제품은** 원료와 원료의 배합이라기보다는 **반제품과 원료의 혼합 형태로 판단**되며, 현재 식약처가 **시범사업**을 통해 **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기준**을 마련하고 있으므로, 신청기업도 단독 실증특례보다는 다른 화장품기업들과 함께 맞춤형 화장품 **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실증할 것을 권고**하였다.

○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동 제품의 **맞춤형 화장품 해당 여부**, 적합한 **안전관리 기준** 등을 면밀히 검증하되, 시범사업 수행에 있어 **애로사항이 발생**할 경우 **특례부여를 재논의**하기로 하였다.

□ **(기대 효과)** 화장품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화됨에 따라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고객 개개인의 피부특성에 맞고, 주문과 동시에 조제되는 **1:1 맞춤 화장품 시장의 확대**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[안건10]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 : 규제없음

□ **(신청 내용)** ㈜**비앤드코리아**는 **시내 및 온라인 면세품**을 **출국장 탑승게이트 앞**에서 **스마트카트**를 **이용**하여 **인도**하는 **서비스**를 수행하기 위한 **인도자** 또는 **인도보조자 자격**을 **요청**하는 **임시허가**를 신청하였다.



○ 동 서비스는 고객이 **출국전 지정**된 **인도장**에서 **면세품**을 **수령**하는 **기존 방식과 달리,** 사물인터넷(IoT)* 기능을 갖춘 **스마트카트(Smart Cart)**를 이용해 업체가 해당 **게이트로 찾아가 면세품**을 **인도**하는 **"이동식 간이인도장"** 방식이다.

* 개별 면세점 시스템과 연동하여 고객에게 묶음 인도가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으로,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품 정보, 위치, 수령시간 등의 정보 제공

□ **(현행 규제)** 「관세법」 하위규정인 「**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**」에 따르면 인도자 자격요건이 한국면세점협회와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되고, 인도자만이 인도보조자를 둘 수 있어, 신청기업은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.

* (인도자) 시내·인터넷 면세점 판매품을 운송한 후, 공항내 인도장에서 구매자에게 인도
* (인도보조자) 인도자의 인도업무를 보조하는 역할

□ **(심의 결과) 심의위**는 ㈜비앤드코리아의 서비스는 **인도보조자의 역할**에 해당되며, 관련 규정 상 인도보조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**규제는 없어 별도의 임시허가가 불필요**함을 확인하였다.

○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**인도보조자로서 사업계획을 보완**하여 면세사업자, 인도자(現 한국면세점협회), 공항공사 등 **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수행**하도록 권고하였고

* 인도보조자는 **인도자와 적정한 계약을 체결**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득하면 사업 가능

○ **관세청에 대해서는** 신청기업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**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**할 경우 **적극 검토**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□ **(기대 효과)** 동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**인도장의 혼잡 완화**와 **대기시간 감소** 등으로 인해 면세품 구매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

○ 공항시설 이용시간 증가에 따른 **면세점의 매출 증가**, 미 인도 물품 감소에 따른 **반품비용 감소**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[안건11] 전자저울 활용 스마트 이력 서비스 : 규제없음

□ **(신청 내용)** ㈜**그린스케일**은 블루투스 전자저울을 활용하여 상품 계량정보 등*을 전송하고, 사용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농산품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**스마트 이력 서비스**의 **임시허가**와 **실증특례**를 신청하였다.



* 생산자/품목/생산지/시기/양(kg) 등 생산·출하·판매 이력 정보

□ **(현행 규제)** 「**계량법**」은 상거래나 증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오차 관리가 필요한 **12종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 의무***를 규제하고 있고, 「**전파법**」은 전자파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한 **적합성평가(KC인증) 의무**를 규제하고 있다.

* 12종 계량기 중 동 제품이 해당되는 비자동저울에 대한 세부 내용은 「비자동저울 기술기준」에 규정됨

○ 신청업체는 블루투스 전자저울은 무선통신 기능을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저울이므로 「비자동저울 기술기준」 내에 **전송 데이터의 무결성**과 관련한 **기술기준 내용의 신설이 필요**하다는 의견이다.

□ **(심의 결과)** 심의위는 ㈜그린스케일의 제품·서비스는 시장 출시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**규제 없음을 확인**하고 자유롭게 서비스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.

○ 당초 신청기업은 (前)미래부의 임시허가* 이후 현재 **정식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사업자**라 판단하여 산업부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였으나

* 정보통신법 상 舊 임시허가 1호('15.10.12~'17.10.11)

○ 심의위는 동 전자저울이 계량법에 따른 형식승인('15.9)과 전파법에 따른 KC인증('16.6)을 **旣 획득**하여 시장 출시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없어 **임시허가의 대상이 아니며**

* 블루투스, Wi-Fi 등 무선통신이 가능한 전자저울 8종이 旣 형식승인을 취득하여 출시 중

○ **데이터 무결성 확보 등을 위한 기준 신설**은 인증비용 상승, 기술혁신 저해 등 **관련 업계에 부담을 주는 규제**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.

○ 또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는 「농수산물품질법」에 따라 사업자가 **자율적으로 등록**할 수 있고, 이력관리 데이터도 Open Api*를 통해 개방되어 **누구나 활용**할 수 있으므로 **실증특례의 대상이 아님**을 확인하였다.

* 데이터 플랫폼을 외부에 공개하여 응용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도록 공유하는 인터페이스

□ **(기대 효과)** 무선통신이 융합된 계량저울과 관련 서비스를 통해 농산품 **입출고 공정관리의 효율 향상, 스마트 이력관리** 등 응용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

○ 농산품 계량정보와 생산→이력→판매 정보의 융합을 통해 **생산·유통 과정의 새로운 서비스와 편익**을 제공하는 시장이 성장할 전망이다.

【 향후 계획 】

□ **산업부 성윤모 장관**은 "**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시행 100일**이 지남에 따라 제도가 **성공적으로 안착**되고 있으며, 이제는 국민의 **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 창출**에 본격적 매진해야 할 시기"라고 강조하며

○ 5월부터는 산업부 내 **규제 샌드박스 전담 조직과 인원을 보강**하여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, **특례사례에 대한 홍보를 강화**하여 누구나 알기 쉽고 혜택 받기 쉬운 **실효적인 제도를 만들어나갈 것**을 당부했다.

○ 아울러,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 외에도 **관련부처에 대한 정책권고** 등 **적극 행정을 통해** 어려움을 가진 기업들에 **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**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.

□ 한편, 지난 1, 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에서 **규제애로가 해소된 9개 사업**들 모두 예정된 일정대로 **차질없이 추진**되고 있다.

○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1호 안건인 "**도심 수소충전소** 구축"은 **8월 준공**을 위해 국회사무처, 지자체 등과 지속 협의하며 **예정대로 진행**중이며,

○ 데이터를 활용하여 新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"**전력데이터 공유센터"는 지난 4월 16일 개소**하여,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
□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신청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.

○ 현재까지 **총 101건의 신청서가 접수**되어(4.29기준) **62건의 안건을 처리**하였으며, 향후에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법적·기술적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**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**이다.

* 신청현황(101) : 신속확인 43건, 실증특례 22건, 임시허가 36건

* 처리현황(62) : 신속확인 30건, 실증특례 10건, 임시허가 3건, 정책권고 등 7건, 신청철회 등 12건

□ 산업부는 빠른 시일 내에 **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를 개최**하여 추가 안건을 심의·의결할 계획이며, 구체적인 일정은 전문위원회의 안건 검토 결과 및 논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확정할 예정이다.

○ 아울러, 좀 더 많은 기업들이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**SNS를 활용한 특례사례 홍보, 협·단체 대상 제도 설명회, 규제 샌드박스 관심기업 밀착 상담회** 등 제도의 홍보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최수연 서기관(☎ 044-203-4511), 김철영 사무관(☎ 044-203-451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